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1. 노인인권(정의)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 생활노인 권리

아름다운요양원 입소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

시설운영자, 종사자, 입소어르신, 가족 및 보호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4.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즉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한다.

5. 노인학대 유형 및 내용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6. 노인학대 예방

-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 2)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제시 및 수록한다.
- 3)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비치하고, 종사자와 입소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보급하고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을 분기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4) 종사자는 입소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5) 종사자는 입소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조롱, 욕설,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사용하지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7.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 1)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 2)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게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 노인의 학대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노인학대 신고기관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유형과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징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 육안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
-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있는 탈수 상태 또는 급작스러운 체중감소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
- 흥분,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
- 말하기를 꺼리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입을 때 혹은 입을 때의 어려움
-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젖어있음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대소변 냄새, 땀, 발냄, 욕창 등이 방치됨
- 의복 및 이발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 환경
-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 (자기방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양육을 하지 않음

Q1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설) **1577-1389** 또는 **129**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Q2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분 노출 걱정으로 신고가 꺼려지는데... 보호가 되나요?

네!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서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

※ 또한, '16.1.25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 및 시행되어 신고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인학대로 신고하면 학대피해노인은 어떠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노인학대 판정 후 학대피해노인 또는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상담, 치료, 법률 서비스 등)
- 일시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및 지정양로시설 연계
- 학대 재발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

노인학대는 어떻게 처벌 받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착수치임을 주는 행위 •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는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112 또는 1577-1389



보건복지부



경찰청



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 **기관명:**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노인회관 4층

✓ **개관일:** 2019. 01.

✓ **대표번호:** 031-268-1389

✓ 주요사업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사례관리**
- 노인통합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네트워킹**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노인인권교육**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남부센터)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북부센터)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양주시, 하남시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센터)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우리 아름다운요양원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우리 아름다운요양원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아름다운요양원



아름다운 요양원은



직원&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 직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해 주세요.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며 **존칭을 사용**하여 예의를 지켜주세요.

아름다운요양원 폭언·폭행·성희롱 예방수칙



폭언 예방하기

- 1 부드럽고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하며,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2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피하고 항상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폭행 예방하기

- 1 폭행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2 모든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희롱 예방하기

- 1 성희롱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2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피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